

질병관리본부와 한국역학회 간의 업무 협약서

질병관리본부와 한국역학회(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는 질병 발생 역학 연구를 통해 위험요인과 기전을 밝혀, 국민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양 기관 업무협약서(2009.5.8.)를 다음과 같이 갱신하여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질병 감시, 역학조사, 예방관리와 관련하여 기관 상호 간의 협력 및 운영을 통해 질병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 원칙) 양 기관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당해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기반 위에서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3조 (협력 분야) 양 기관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1. 감염병 유행 발생 등 질병 유행발생시 역학조사에 대하여 상호 기술 지원 및 자문을 통해 원인규명을 위해 노력한다.
2. 공동으로 역학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 협조 및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3. 주요 건강상태와 질병 관련 지표의 기술역학적 특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이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효과적인 질병관리 정책개발을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질병관리본부 내 각 부서와 주요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건강 질병 정보를 공동 연구하며, 기 구축된 빅데이터의 공익적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5. 과학적 역학연구에서 밝혀진 연구성과를 인구집단 건강향상을 위해 적용하고, 이의 실제 효과를 평가하는 중개역학연구의 수행을 위해 노력한다.
6. 국민 건강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하에 전국적인 홍보 캠페인 수행에 노력한다.
7. 양 기관은 현장역학조사 교육과정의 발전과 역량 있는 역학조사관 양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노력한다.

8. 양 기관은 국가 및 지역단위의 건강 수준과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의 원활한 수행과 질적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노력한다.

제4조 (비밀유지) 1. 양 기관은 상호 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상대 기관의 비밀사항을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양 기관은 본 협정서의 이행 중 제공 받거나 취득한 정보를 상대 기관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효력발생) 1. 이 협정서는 두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협력기간은 이 협정서에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만료 3 개월까지 일방의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5년간 재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기타) 1. 이 협정서에 대한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제 4조에 명시된 비밀유지사항은 본 협정서의 효력 종료 후에도 양 기관이 동 의무의 폐기에 동의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양 기관은 본 협정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혹은 협정의 필요성이 해소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본 협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정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본 협정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정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장이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며, 각 원문은 모두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2019년 7월 11일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정은경

(서명)



한국역학회
회장 김동현

(서명)